

[별첨 3]

Ⅳ.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거나 형사방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 가.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4의2. 보건의료직 공무원 : 「공무원 임용령」 별표1 과학기술직군 중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으로 정의되는 사람 또는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의3. 소방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의4.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피공제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중재, 조정 또는 화해 등의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중지, 유지 또는 이행 등의 명령, 처분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7. 「방어비용」이라 함은 피공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8.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나.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9.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나.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1회의 공제사고 :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형사절차를 포함)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나. 피공제자가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1심, 항소심,

상고심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피공제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1회의 사고로 합니다)

11. 「의료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의료행위(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잘 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12.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등의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13. 배상책임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14.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15.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6. 보험금 분담 :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17. 대위권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18. <삭제 2023. 12. 27.>
19. 형사방어비용 :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과 관련법령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20. 형사절차 :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시작되는 수사 및 공소 절차를 포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1. 연단위 복리 :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2.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3.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4.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공제회 회원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6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등록의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조사) ① 보험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사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2조(자동보고연장 보장기간)에 정한 보고연장보장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 공제회비를 납입하면 제13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으로 이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1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보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 또는 개시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 또는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보고연장보장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2년간
2.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로부터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 이후 제1호 기간 동안에 보험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등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 1항의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

연장보장기간은 이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공제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 공제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회비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회비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업무의 분담) ① 공제회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15조(공제회비 요율) 손해배상공제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요율서는 별첨 3-1과 같습니다.

제3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16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공제회비를 받은 때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가 손해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공제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이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회원 또는 피공제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공제회가 제36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16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19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 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 비용을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2. 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3. 형사합의금

③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가 모두 발생한 경우 둘 중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공제기간 내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절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며,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 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따로 정하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자의 성명 및 그의 주장, 피공제자가 최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지한 상황 및 그 원인

2.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단,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알았을 경우 그 상황 또는 원인의 내용 및 발생일, 관계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 경우에 공제회에 알린 상세한 내용을 기초로 피공제자에 대해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2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개시일자) ① 제19조(보상하는 손해)제3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공제회 및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②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보험사는 제2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또한 공제등록증권에 보상비율이 기재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상비율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2.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형사방어비용 등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의 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2항의 총 보상한도액을 적용할 때에 아래의 경우를 불문합니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④ <삭제 2023. 12. 27.>

제26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험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8조(보험금의 부담)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금의 부담) ①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가입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본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9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법률상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9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32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관 회원의 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33조(등록 전 알릴 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기록의 완비)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본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V.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제20조 관련)

(1)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사가 보상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상하는 손해)의 공제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보건 의료직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를 포함합니다)로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청구받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
2.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지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의 참고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같습니다)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제2조(피공제자) 피공제자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지방공무원,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 보건 의료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용어정의>

공무	1. 지방자치법 제9조,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3. 보건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보건 의료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 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증권 내 기재 업무 수행 해당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포함, 이하 같음)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의 신체장해, 정신적 고통,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
3. 피공제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법률상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공제자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위 제7항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해자의 재물손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1.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 가동 및 제3자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행위에 기인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또는 피공제자의 소속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단, 아래의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등이 구상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나) 피해자인 공무원 및 직원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무를 수행한 피공제자(소속 공무원 및 직원 포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13. 다음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및 민원으로 인한 손해.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행위들이 실제로 생기거나 행하여진 경우에 한합니다.
 - 가)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등의 명예훼손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침해
 - 나) 피공제자의 범죄행위
 - 다) 법령 위반 행위
 - 라) 피공제자가 위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 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사목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위해 위법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재산의 처분
 - 바) 공사청부계약 또는 부동산 판매계약이 위법적으로 체결된 경우
 - 사)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접대비 등을 위법적으로 지출한 경우
 - 아) 아래의 사람들에 대한 위법적인 이익 제공
 - 1) 정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거래기관의 임원/종업원 등
 - 2)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으로 여겨지는 기타 대상들
 -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부 또는 보조업무 중 관련 기준 및 법률에 위반하여 시행하는 기부/보조활동
 - 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가 위법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 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4.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기인하는 배상청구, 소송 등.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러한 사유 또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배상청구, 소송 등
- 가)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 등
 - 나) 전쟁, 노동쟁의, 방사선오염, 환경오염 등
 - 다)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 등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17.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20.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22.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공제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공제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의 과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간염(HEPATATIS)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전염병(가축 전염병 포함) 예방, 관리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피공제자의 자산(토지와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통칭함)의 매매, 임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30.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31. 피공제자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제2조에서 정한 공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거나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피공제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선 전의 선거 공약에 기인한 소송 등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항 이행 또는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배상책임
 33. 전력공급 중단과 관련된 배상책임
 34. 소음, 티끌, 먼지, 분진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35. 새로운 정책의 수립·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변경·개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정소송 청구행위 다만, 상기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민사상 배상책임 청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래 각 목의 죄 및 그와 유사한 죄(특별법을 포함합니다)로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 포함)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주문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 제외)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3. 형법 제2편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4. 형법 제2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5. 형법 제2편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6. 형법 제2편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7.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140조의2, 제142조 및 제144조의 범죄. 이 경우 제140조의2 및 제142조의 범죄는 미수범을 포함합니다.
 8.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중 제145조 및 제146조의 범죄. 이 경우 제145조, 제146조의 범죄는 미수범을 포함합니다.
 9. 형법 제2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4조의 범죄

10. 형법 제2편 제11장 무고의 죄
 11. 형법 제2편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2.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 및 제175조의 범죄
 13. 형법 제2편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4. 형법 제2편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5. 형법 제2편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6. 형법 제2편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7. 형법 제2편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8.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품속에 관한 죄
 19. 형법 제2편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21. 형법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
 22.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2조, 제273조 제2항 및 제274조의 범죄. 이 경우 제271조제2항·제4항, 제27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도 포함합니다.
 23.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제325조 및 제327조의 범죄. 이 경우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포함합니다.
 26.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7.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8.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29. 형법 제2편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범죄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범죄
-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 포함)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판결이 유죄인 경우라도 피공제자가 관련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 포함)을 보상합니다. 이때, 피공제자의 당연퇴직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 ④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

할 때 그 일부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죄수(罪數) 대비 면책되지 않는 죄수(罪數)의 비율에 보상한도액을 곱한 만큼을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피공제자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피공제자) 보험사는 특별약관 제2조(피공제자)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을 받아 공무 또는 업무(이하 '공무'로 칭합니다)를 수행하는 아래의 사람을 피공제자로 포함합니다.

-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 「소방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따라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 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
- 구급상황관리사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공무 등을 수행하는 자
- 구급(의료)지도의사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시·도 119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등에 의해 공무 등을 수행하는 자
- 청원경찰 : 「시·도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에 의해 공무 등을 수행하는 자
- 소방활동종사명령수행자 : 「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자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삭제 2023. 12. 00.>

(1-3) 소방공무원 자동차, 항공기, 선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소방공무원에 한함)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①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동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관련 공무원의 강제처분 적법성 판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는 담보위험을 제외한 손해
 - ③ 피공제자가 항공보험, 선박보험, 선주상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1. 피공제자가 가입한 항공보험, 선박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
 2.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피공제자가 가입한 항공보험, 선박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 <삭제 2023. 12. 00.>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사는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 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배상공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공제회 및 보험사가 보상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업무 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을 말합니다.

제2조(피공제자) 피공제자란 제2조(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22조(손해 배상 청구일자)에도 불구하고 제19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적용일자 이전에 발견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 및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장 또는 장이었던 사람(피공제자의 소속 공무원(직원)이나 소속 공무원(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2. 피공제자의 소속 공무원(직원)이나 소속 공무원(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공무원(직원)이나 공무원(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3. 신체장해(질병 또는 사망 포함)
4.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 포함) 단,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겨서, 그 결과 제5조에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6.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누출
7.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
9.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10. 행정종합공제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공제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단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상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12.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13.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오염 물질의 배출, 누출, 누출 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나) 오염 물질의 검사, 감시, 청소, 제거, 누출 등의 방지, 처리, 무독화 또는 중화 화의 지시 또는 요청. 오염 물질은 고체, 액체 혹은 기체 상태나 열을 띤 유해한 물질 또는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1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15. 피공제자에 지급한 보수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16. 제3자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17. 이 공제등록증권의 공제개시일 시점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손해 배상청구 또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동일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18. 항공기, 승강기, 자동차 또는 기타 실외의 선박·차량(인력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

19.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의 침해

20.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21. 법인 기타 모든 조직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신용훼손, 루머 혹은 브랜드가치하락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2.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3. 계약의 조항, 보증 또는 합의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

24.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중단, 종료 또는 그 내용의 변경에 기인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25. 피공제자의 도산

26. 유가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의 거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7.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규에 의거한 부정경쟁에 근거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28.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공제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29. 피공제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경영, 관리하는 사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나, 피 공제자의 모회사, 자회사, 계승한 사업체 및 그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단,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여, 상기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0.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누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공제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31. 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정의>

개인정보	생존하는(피공제자 소속 공무원(직원)을 제외합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 기술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누출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상의 문제, 종이나 자기디스크 등의 도난, 분실 및 사용인에 의한 반출 등에 의해 개인정보로서 식별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제삼자에게 알려지는(알려진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것을 말합니다. 단,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의도적으로 제삼자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발견	발견이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하여, 다음 중 빠른 때를 말합니다. ① 피공제자의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공제자에 제기되는 최초의 통보 ② 언론매체 또는 미디어에서의 최초의 공표 ③ 인터넷 게시판에의 기재 등 제3자에 의한 최초의 공표 ④ 피공제자의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에 대한 공제회 및 보험사의 승인
위문품·위로금 비용	개인정보가 누출된 개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사죄를 위해서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송부하는 위문품(피공제자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서비스권, 할인권, 티켓, 회수권 등이나 피공제자만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상품 등은 제외합니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위로금 및 위문품 비용은 1피해자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보험사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합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라 함은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2-1) 위기관리실행비용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 에 기인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위기가 다음에 기재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1. 기명 피공제자가 공적 기관에 대하여서 문서에 의해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것
 2.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그 외 유사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것
-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배상공제 특별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 위기관 개인정보배상공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누출의 발견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 피공제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보험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공제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 1) 변호사로부터 법률상의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단,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나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정기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 또는 제기되는 것에 기인한 보수를 제외합니다)
 - 2) 위기의 원인 조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 3) 전화 회선의 증설 비용, 통화료 또는 통신 업무를 콜 센터 회사에 위탁하는 비용
 - 4)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 5)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 6)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 7) 위로금·위문품 비용

* 위문품 및 위로금 비용 한도 : - 1인당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위기

5.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장이나 장이었던 사람(기명피공제자의 소속 공무원(직원)이나 소속 공무원(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 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한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써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누출에 기인한 위기
8.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위기

제4조(보상한도액) ① 공제회가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아래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 보상한도액이 되며, 공제회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 : W
 위기관리실행비용 자기부담금 : W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비율 : %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공제등록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 및 보험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누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경찰서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보험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공제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추가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보험사에 대하여서,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되는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의 조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보통 약관 제28조(보험금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9조(보통 약관과의 관계)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보통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2)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사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누출배상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에 대한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공제자(공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으로 보험사가 타당하고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단,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에 생긴 비용에 한합니다). 단,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는 다음에 기재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누출의 원인 조사 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비용
- 2) 위로금·위문품 비용
- 3) 사과 광고 게재, 우편대금 등 위기에 의해 임시로 발생한 비용
- 4) 누출한 개인정보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

- 5)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6)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
 - 7)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비용
 - 8) 제3자로부터 불합리하게 강요 받은 일체의 금액
 - 9) 피공제자의 인건비 및 그 외 일반 관리비
3. 위기관리컨설팅회사 : 보험사가 승인하는 위기의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컨설팅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초년도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생긴 위기
4. 이 계약의 공제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5.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장이나 장이었던 사람(기명피공제자 의 소속 공무원(직원)이나 공무원(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에 기인한 위기
6.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 분실 또는 도난(그에 따른 재물의 사용 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한 위기(단, 화재, 파열, 폭발 등의 물리적 사유에 의한 경우(직, 간접을 묻지 않습니다)를 제외하고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누출이 생긴 경우, 그 결과로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누출에 기인한 위기
8. 피공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위기

제4조(보상 한도액) ① 보험사가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공제기간 중 지급하는 총 보상한도액으로 하며, 한편 보험사가 이 계약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 특별약관 조항과 추가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기관리컨설팅비용 보상한도액 : W

제5조(1회의 위기) ①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그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 ② 1회의 위기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공제등록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위기의 통지) ①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 및 보험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누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경찰 혹은 관공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일
5. 그 외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공제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서 제6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대체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의 조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8조(보험금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컨설팅비용의 금액」로 대체합니다.

제9조(보통 약관과의 관계)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추가특별약관 조항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보통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4)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 특별약관

- ①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사는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락 등,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등록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신청서

회원명			
소속 및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가입인원 (정원 수)	명 ※ 공무원 정원조례 등에 따른 총 정원 수 기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이 공무원 정원의 20% 초과 시, 초과분만 합산하여 기재)		
세부현황	공무원 정원 : 명 / 공무직, 기간제 정원 : 명 ※ 가입인원 확인 시 필요		

☐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상한도

보상한도	업 무 명	1청사고 한도액	연간 총보상한도액
	대인대물일괄	억원	억원

☐ 개인정보배상 특약 보상한도

보상한도	담 보	1사고당 및 연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개 인 정 보 배 상	억원	(백만원)
	위기관리실행비용	억원	5백만원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억원	5백만원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신청서(지방공공기관)

회 원 명			
소속 및 담당자		연 락 처	
소재지			
가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제등록 상세업무			
공제(보험) 등록경력	☐ 최초등록 ☐ 등록경력있음 (보험사 :) ※ 공제(보험)등록사항 및 사고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인원		명	※ 기관 내 최소 조직 단위(부/팀 등) 이상 가입 가능

☐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상한도

보상한도	업 무 명	1사고당 한도액	연간 총보상한도액
	대인대물일괄	억원	억원

위와 같이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공제(보험) 가입사항	년도	보험사	보험료	보상한도	공제금액

공제(보험) 사고사항	년도	사고일자	지급보험금	사고내용	종결/진행중

추가 질의 사항

1. 피공제자의 공제(보험)등록이 거절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중 (예)로 대답한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종합배상 사고접수양식

회 원 명		계 약 번 호	
사 고 일 자	년 월 일	사 고 시 각	
사 고 장 소			
사 고 경 위			
자치단체 사고처리 업 무 담 당 자	소속 부서 및 성명 : 전화 : 팩스 :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연락처 :		
피 해 사 항	1. 피해 상태 2. 피해추산액		
기 타			